

보도자료



보도 2019.7.17(수) 조간 배포 2019.7.16.(화) 10:00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담 당 자	박진애 서기관(02-2100-2951) 강련호 사무관(02-2100-2986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병칠 부국장(02-3145-8022)

제 목: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

- ◆ 인가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을 유지 하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
 - 인가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('인가 컨설팅' 제공)하고, 금융 위원회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
- ★ '19.10.10~10.15일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

I 그간 경과

결정('19.5.26)

	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(*18.12.24.)
	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 한 2개사 *에 대해 심사 를 진행
	* 3개 신청자 중 신청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('19.5.7.)된 1개사를 제외
	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개사 모두 예비인가 를 불허 하되,
Ò	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

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를 재추진키로

Ⅲ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

□ **인가심사의 공정성**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,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

- ① (인가개수)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,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
- ② (인가범위)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만큼,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
- ❸ (심사기준)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주주구성·사업계획의 혁신성· 포용성·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
 - ※ <참고2> 평가 항목 및 배점표('19.1.31 발표 자료)
 <참고3> 인가심사기준('18.12.24일 발표 자료)
- 4 (외부평가위원회 운영)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 위원회(이하 '외평위')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신규인가 결정
- □ 다만,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, 금융위원회·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
 - ① (컨설팅 제공)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全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"인가 컨설팅"을 제공
 - ※ 영국에서 소매금융전문은행(SSB) 도입과 관련하여 신설한 조직인 New Bank Start-up Unit의 경우 신청前 신청 적응기간(Mobilisation) 승인의 **全 단계에** 걸쳐 **신청자**에게 **정보 및 지원 제공**
 - ② (금융위원회 운영 개선)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·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
 - 필요시 **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**하여 **질의답변**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
 - ③ (외평위 운영 개선)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
 - 필요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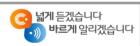


□ 예비인가 신청 접수 : '19.10.10~10.15일
□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: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
□ 본인가 심사결과 발표 :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이내
※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관련 안내사항
□ 컨설팅 창구 : 금융위원회 은행과 02)2100-298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)3145-8024
□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안내 강화
- 인가매뉴얼 게시 :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/업무자료/공통/업무 해설서/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 및 FAQ
- QA코너 : 금감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/업무자료/은행·중소서민금융/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&A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u>http://www.fsc.go.kr</u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신규인가 재추진 관련 OA

O1.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적 경영주체는 ICT 기업만 가능한가?

- □ 인터넷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 든지 경영주체가 될 수 있음
 -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**승인하에 의결권 지분** 34%를 소유할 수 있음
 -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)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음
- □ 영국·중국·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, 스마트가전, 유통 분야의 업체들도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도가 가능함

국가	사례				
영국 (Challenger Bank)	- Tesco Bank(유통업체 Tesco plc 100%) - Sainsbury's Bank(유통업체 J.Sainsbury's plc 100%)				
 중국	- My Bank(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계열 앤트파이낸셜 30%)				
	- XW Bank(스마트가전 샤오미, 29.5%)				
일본	- 라쿠텐은행(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계열 라쿠텐카드, 100%)				
	- 세븐은행(유통업체 세븐일레븐재팬, 38%)				
	- 로손은행(유통업체 로손 95%)				
	- 소니뱅크(전자제품업체 소니계열 소니파이낸셜홀딩스 100%)				
	* 다이와넥스트은행(다이와증권그룹 100%)				

※ 참고: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의 범위

- ① 표준산업분류상 ICT 기업에는 통신업자, 소프트웨어개발업자, 정보 서비스업자 등이 포함
- ② 전자상거래, 스마트가전, 유통 등 분야의 업체들은 표준산업분류상 ICT기업이 아님*
 - * 전자상거래(도소매업), 유통(도소매업), 스마트가전(제조업)

O2. 인가절차와 관련하여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? □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 ○ 또한, 인가절차는 인가심사업무의 전문성,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랜기간 제도·관행으로 확립된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□ 다만, 그 동안 제기되었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하여 인가심사과정 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하였음 O3. 일괄신청, 일괄심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인지? □ 지난 '18.12월 금융위원회는 경쟁도 평가 결과,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**2개사 이하**의 **제한적 범위** 내에서 **인가**하기로 결정 □ 인가 규모가 정해진 상황 하에서 신청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인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, '일괄신청 일괄 심사'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 ○ 신청 순서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 □ 금번 신규인가 재추진시에도 2개 이하 인가라는 기존 원칙을 지키는 만큼, '일괄신청 일괄심사' 방식도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

참고2

예비인가 평가항목 및 배점 ['19.1.31일 발표자료]

평가항목 평가내용	′19년			
①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	100			
자본금 규모 • 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할 예정일 것	4 0			
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•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•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이 적정할 것	60			
②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	100			
대주주 적격성 • 한도초과보유주주를 비롯한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, 인터넷전문은행 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	-			
• 주주 구성이 은행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•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 •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장기간의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참여함으 로써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	100			
③ 사업계획(혁신성)	350			
사업계획의 혁신성 - *차별화된 금융기법,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 -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할 것	250			
경쟁 촉진 • 기존 은행산업,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				
금융 발전 •금융산업의 부가 기치 제고, 금융소비 자의 편의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	70			
해외 진출 •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	30			
④ 사업계획(포용성)	150			
사업계획의 포용성 • 서민금융 지원,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 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	120			
영업내용·방법의 적정성 • 영압내용・방법이 법령,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	_			
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· 소비자보호체계·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것	30			
5 사업계획(안정성)	200			
•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칭출이 가능할 것 •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의지가 있을 것 •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	100			
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•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,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체전략, 기타 사업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할 것	25			
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•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 실현가능성 성이 있을 것	25			
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 •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성 비율 등이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	-			
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 • 리스크관리체계·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것	25			
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• 아시회 구성계획이 금융회사 자배구조법에서 정한 아시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•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	-			
• 이사회의 경영진의 관계,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, 감사위원회의 권 · 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적합할 것 • 임직원의 법규준수,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 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•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,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 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	25			
기타 •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, 감독기관의 감독 검사수행에 법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				
6 인력·영업시설·전산체계·물적설비	100			
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• 전단력 확보및 전단력의 전당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계획 등이 작성하지 여부 등	20			
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• 업무공간 및 이해상충병자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등	20			
전산체계, 그 밖의 물적설 •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·바이러스 비 확보계획의 적정성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적정할 것 등	60			
※ 외국 금융회사(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포함) 신청시 은행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				
합 계				

참고3

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 ['18.12.24일 발표자료]

[1] 은행법상 인가 심사기준

- □ 인터넷전문은행 (예비)인가시 **심사항목**은 **은행법령상 인가 심사** 기준*을 기본적으로 적용
 - * 「은행법」 제8조,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1조의7,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5조·별표 2-2

●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

-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인지 여부
- 소요자금 조달이 현실성이 있고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 할 것

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

- 대주주가 은행법령상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-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·주요주주 등이 아니며, 은행법령상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
❸ 사업계획

- 추정재무제표·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
- 은행법령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
-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**내부통제장치**와 **업무방법**이 마련되어 있을 것

4 발기인 및 임원(본인가시 심사)

-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련 **자격요건을** 충족하는지 여부

- **5**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시설
 - -(인력)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등
 - (영업시설)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,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등
 - (전산체계)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,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될 것 등
 - (그 밖의 물적시설)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
- **6** 외국 금융회사 또는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신청 관련
 -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
 -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
 - 은행 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**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** 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등

[2] 추가 심사기준

- □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 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중점 평가
 - *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, 별표
 -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
 - 설립 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을 마련할 것

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

-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,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감안한 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-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과 정보 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
- **한도초과보유주주**가 **장기간의 시야**를 가지고 인터넷전문 은행업에 참여함으로써 **안정적인 경영**에 기여할 것 등

❸ 사업계획

- (혁신성) 차별화된 금융기법,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,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것
- (포용성) 서민금융 지원,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 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
- (안정성)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
- (경쟁 촉진) 기존 은행산업,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
- (금융 발전)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,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
- (해외 진출)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실천능력을 보유 할 것 등